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- 호

도시관리계획[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31호(2008.7.10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82호(2011.7.7)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「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6년 제1차 성동구 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3월 일

성 동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성동구 성수1가동 656-292 일대 「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획지계획(SR-㉒-1) 변경
- 획지 SR-㉒-1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

2. 도시관리계획(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-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 고	
			위 치(성수1가동)		면적(㎡)		
SR-㉒	SR-㉒	24,928	기정	㉒-1	656-292, 671-29, 694-3, 694-11, 656-757	3,318	· 공공공지/도로 조성후 기부채납 (면적 약356㎡이상/약206㎡이상)
			변경	㉒-1	656-292, 671-29, 694-11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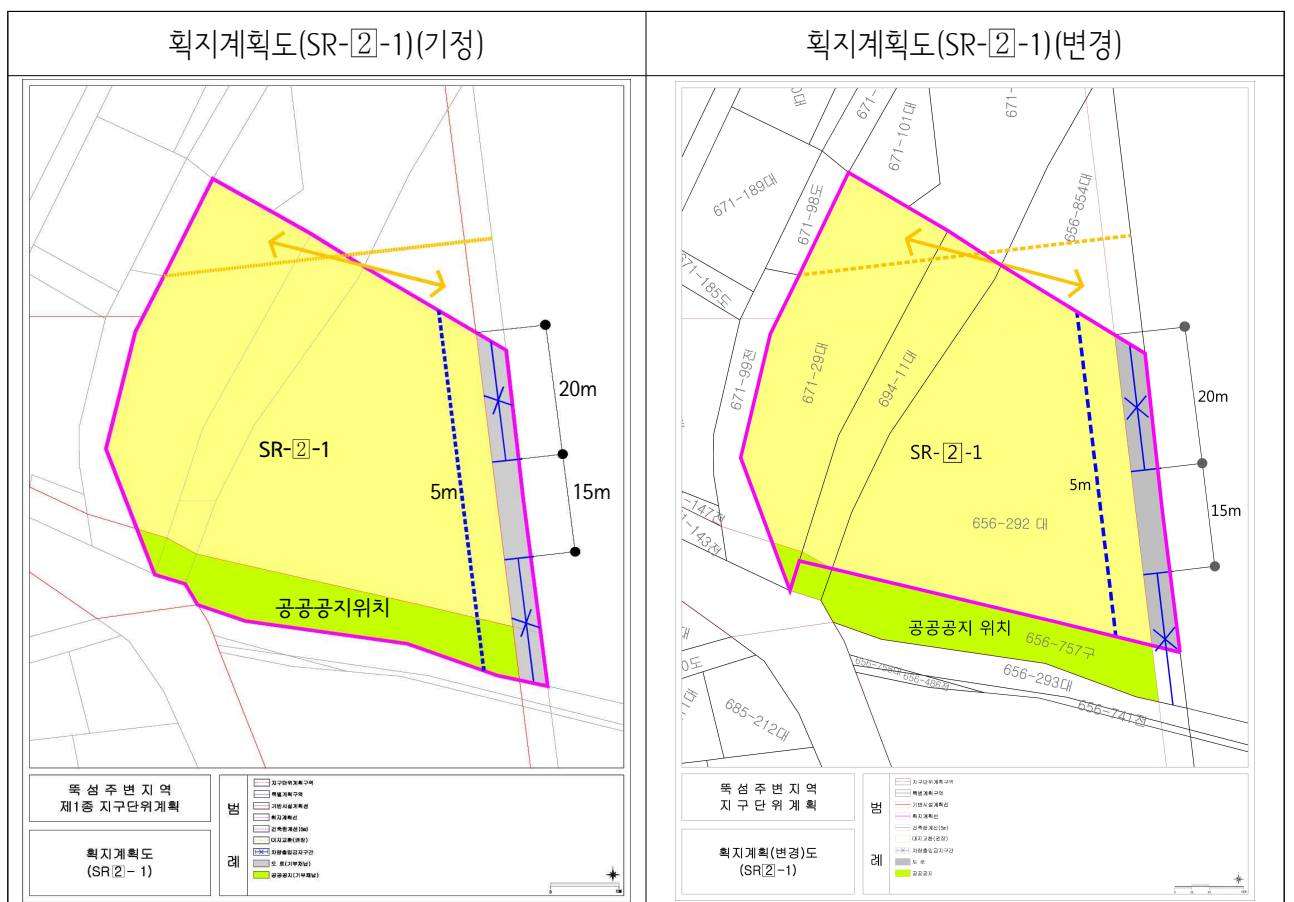
주) 상기면적은 측량성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내용	변경사유
· 획지면적의 변경 : 3,318㎡ → 2,853㎡ 감) 465㎡(14.0%)	· 재정비중인 독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(안)의 내용(공공공지 위치 지정 폐지하고 도로 결정 예정)을 반영하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656-757, 694-3번지를 획지에서 제척하고, 차량출입구를 왕십리로에서 이면도로로 변경

○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3. 관계도면

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(☎2286-5560~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